Ⅳ 오픈마켓형 데이터 거래

오픈마켓형 데이터 거래는 앞에서 살펴본 제공형, 창출형(공유) 데이터 거래와는 다르게 데이터 판매자, 구매자 외에 중개자가 추가적으로 거래에 참여한다. 중개자는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운영하며, 대표적으로 중개 플랫폼으로는 데이터 거래소가 있다. 중개자는 온라인몰의 형태인 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하여 데이터 판매회원으로 가입한 판매자와 구매회원으로 가입한 구매자 간의 데이터 거래를 중개한다.

데이터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통해 구매자는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한 탐색 비용을 줄이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데이터 전송, 요금청구 및 지불 등의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데이터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거래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과 유통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74] 한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3)에 따르면 데이터 구매 경험이 있는 사업체의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은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30.3%로 가장 높았다.[75]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판매자의 상품을 동시에 보여주고, 손쉬운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거래소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의 운영주체(중개자)는 공공, 민관합동, 민간 등으로 다양하다.[76] 공공 데이터 거래소는 정부 각 부처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하고, 민관합동 데이터 거래소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주관기관이 플랫폼을 운영하며, 민간 거래소에서는 기업이 주로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판매하는 전용몰의 형태로 운영한다. 현재 국내 보험회사는 공공 데이터 거래소에 해당되는 금융보안원의 금융데이터 거래소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데이터 거래소는 금융데이터가 거래되는 대표적인 데이터 거래소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국내 데이터 거래소 중 보험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금융데이터 거래소

74) 남기연·박정인(2022)

75) 2위와 3위는 각각 '쓸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 28.7%, '개인정보 처리 기술력 및 예산 부족' 27.1%로 나타남

76) 정준화·박소영(2022)

의 현황과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보험회사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일본 정보은행과 영국 디지미(digi.me)의 정책적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제공형, 창출형(공유) 데이터 거래와는 다르게 오픈마켓형 데이터 거래는 거래소에서의 제도나 규약의 제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외 데이터 거래소의 운영 방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77]

한편 미국과 중국에서도 다양한 데이터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본 장의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랜 기간 데이터 브로커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은 출처와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해왔기 때문에 국내 법제상에서는 미국 데이터 브로커의 사례를 통한 현실적인 시사점 도출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78] 중국 데이터 거래소에서는 유통 데이터의 80% 이상이 공공데이터로 구성되는 등 정부 주도적 성격이 강해[79] 보험회사와 같은 민간기업의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 국내 금융데이터 거래소

국내에서는 안전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20년 5월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하였다.[80] 금융데이터 거래소에서는 데이터 판매자가 데이터 상품을 등록하면 데이터 구매자가 등록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상품 관리, 검색, 거래, 분석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데이터 판매자는 공익, 금전적인 보상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판매하며, 데이터 구매자는 신규 상품, 서비스 창출,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구매하여 활용한다.

금융데이터 거래소는 설립 후 만 3년이 지난 '23년 5월 가입자 수 8,466명, 누적 거래량 12,246건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데이터 거래소에서는 은행, 카드, 증권, 보험을 비롯하여

77) 이와 더불어 해외 데이터 거래소에서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 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외 데이터 거래소의 운영 방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함

78) 손경한(2020)

79) 이상우(2022)

80) 금융위원회(2020. 1. 21), "'안전한 데이터 유통' 금융 분야가 선도하겠습니다."

유통, 빅데이터,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113개 데이터 판매자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고, 4,810여 개의 데이터 상품이 등록되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데이터 거래소는 무료 데이터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예상보다는 시장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75%의 거래가 신용카드사의 데이터 중심으로 이루어져 데이터 거래의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81]

〈그림 Ⅳ-1〉 금융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상품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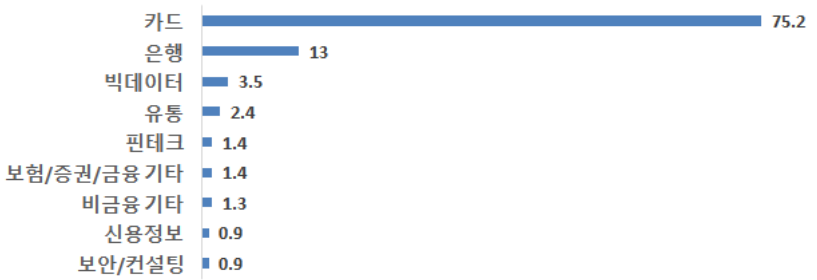

자료: 금융보안원(2023),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AI·데이터 시장플랫폼을 운영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금융데이터 거래소를 통하여 데이터 판매를 시도하였지만 성과는 저조하다. 금융데이터 거래소에 판매를 위한 데이터셋을 등록한 보험회사는 한화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등 2개 사에 불과하며, '23년 12월 14일 기준 금융데이터 거래소에 등록된 데이터 상품 11,315개 중 보험회사가 등록한 데이터는 13개에 그치고 있다. 13개의 보험회사 데이터 중 지금까지 실제 계약이 체결된 데이터는 '고객유형별 장기보험 담보(보장) 가입현황', '고객유형별 장기보험상품 가입현황' 등 2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2개의 데이터 상품은 모두 무료 상품으로 유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 거래 성사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81) 금융보안원 보도자료(2023. 5. 22),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AI·데이터 시장플랫폼을 운영합니다"

〈표 Ⅳ-1〉 금융데이터 거래소에서 판매 중인 보험회사 데이터 목록

회사	데이터 목록
한화손해보험	주택 특성별 누수사고 현황(단독, 연립)
	주택 특성별 누수사고 현황(아파트)
	민영의료보험 장기 가입자의 의료이용 행태
	고객유형별 장기보험 담보(보장) 가입현황
	고객유형별 장기보험상품 가입현황
KB손해보험	병원별 환자의 병원 이용/이탈 자료
	고객 속성별 매월 납입하는 평균 보험료 규모
	고객속성별 병원업종 이용 현황
	블랙박스 탑재 여부에 따른 사고 유형별 사고율
	성연령별 선호 자동차 Top 5
	성연령별 보유 자동차 현황
	서울시 지역별/시간대별 자동차 사고/고장 형태
	자동차 사고유형에 따른 운전자 운전면허 정보

자료: 금융데이터 거래소 검색(검색일: '23년 12월 14일)

금융데이터 거래소에서는 정보주체에 대한 선제적인 동의 없이 주로 익명·가명정보의 형태로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진다.[82] 하지만 가명·익명처리의 부담감과 재식별 가능성, 가명정보의 제한적인 활용처 등으로 인해 실제 대부분의 데이터 거래는 집계된 통계수치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데이터 거래에서 정보주체는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데이터 판매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은 데이터 판매자에게 귀속되어 정보주체에게는 데이터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즉, 국내 금융데이터 거래소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현에 따른 데이터 거래를 성사시키기 어렵다.

82) 금융보안원(2022)

2. 일본 및 영국 사례

가. 일본 정보은행

일본에서는 정부가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과 관리 전반을 맡기는 방식으로 데이터 거래소가 발전하였다. 일본 데이터 거래소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18년 출범한 정보은행이 있다. 정보은행은 정보주체인 개인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신탁받은 데이터를 PDS(Personal Data Storage)를 활용하여 관리·저장하고, 개인이 사전에 지정한 데이터 제공 조건에 따라 개인을 대신하여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이다. 정보주체는 행동이력 데이터, 금융데이터, 건강데이터 등을 정보은행에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 사업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구매하여 상품 개발, 소비자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한 개인은 예금 이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포인트, 할인, 전자화폐 등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83]

일본 정부는 민간단체에 의한 정보은행 인증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정보은행 운영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18년 6월 '정보은행의 사업자 인증에 관한 지침 초안'을, '19년 10월에 '정보은행의 사업자 인증에 관한 지침 2.0 버전'을 발표하여 정보은행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 등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증 정보은행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84] 정부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정보은행이 정보주체와 합의된 조건을 준수하여 데이터 수요처를 심사하고 타당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은행은 정보주체에게 데이터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개인 중심의 정보시장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사업으로 평가받는다.[85]

대표적인 정보은행 사업자인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일본 최초로 정보은행 서비스 플랫폼 'DPRIME'을 구축하였다. DPRIME은 개인의 금융자산, 행동패턴, 신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취합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이며, 동경해상화재보험, NTT Data 등 10개사가 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있다.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DPRIME을 통해 위탁받은 데이터를 수요처에 제공하고 데이터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고객과 공유한다. 데이터 제

83) 大和総研(2019)

84) 総務省(2019)

85) ニッセイ基礎研究所(2020)

공에 동의한 고객은 DPRIME에서 데이터 이용업체와 보상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86]

〈그림 Ⅳ-2〉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의 정보은행 서비스 DPRIME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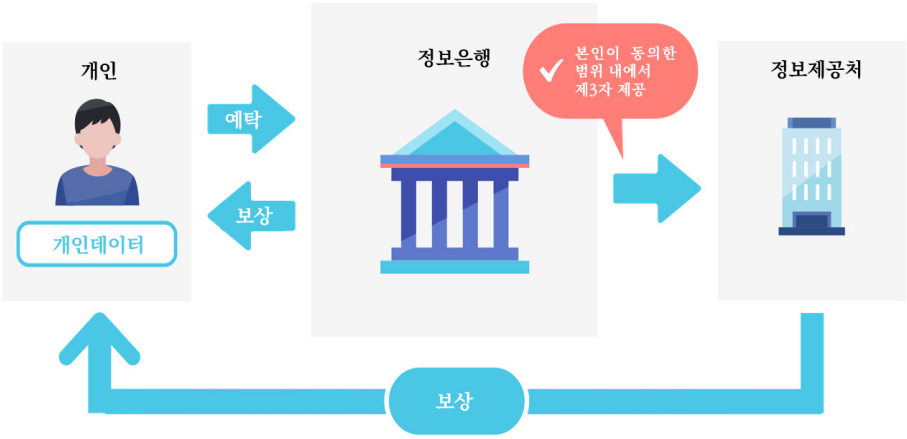

자료: DPRIME 홈페이지

이와 더불어 일본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법 개정을 통해 의료데이터의 유통을 촉진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18년 5월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하여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의료데이터도 익명가공정보의 형태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Opt-out(사후거부권)에 따른 활용을 인정한 바 있다. 즉, 개인이 정보 활용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익명정보 형태의 의료데이터도 정보은행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실제로 정보은행 사업자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는 오사카 지역의 병원, 약국 등으로부터 수집한 의료데이터를 개인의 위탁하에 데이터 수요처에게 제공하고 정보주체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87]

개인은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제3자를 일일이 찾지 않고서도 정보은행을 통해 편리하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물론 정보은행 사업자의 선별 과정에서는 정보주체 본인의 직접적인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은행을 통한 데이

86)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8)
87)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0)

터 거래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의 정보은행은 개인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여 편리하게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영국 디지미(digi.me)

EU에서는 데이터 활용 시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관점에서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18년 5월 시행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신설되어 정보주체가 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되었으며, 이에 앞서 '18년 1월 시행된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금융산업에서 개인 금융정보 이동에 따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영국을 포함한 EU에서는 정보주체가 주체적으로 개인정보 이동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의 데이터 거래소가 발전하였다.

영국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데이터 생태계가 가장 활성화된 국가로 평가되며, '09년 출범한 영국 디지미(digi.me)[88]는 유럽에서 대표적인 데이터 거래소이다. 디지미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데이터 거래 플랫폼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이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기조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89] 개인은 PDS 형태의 플랫폼에 금융, 의료, 신체활동, 소셜 등의 개인정보를 직접 저장, 관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 수요처에 대한 데이터 공유를 승낙하고 이에 따른 보상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수요처의 탐색과 결정을 정보은행에 위탁하는 일본의 방식과는 다르게 디지미에서는 이용 고객이 데이터 수요처를 직접 선택하게 하고 있어 데이터 거래 시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90]

개인은 디지미 제휴사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관리할 수 있다. 디지미는 영국 NHS를 비롯한 미국, 네덜란드 등의 300개 이상의 병원으로부터 1차 진료 데이터(General Practitioner; GP)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며, 영국, 호주, 유럽 등에서 천여 개 이상 은행의 거래내역 데이터를, 그리고 애플헬스(Apple Health), 구글핏(Google Fit), 핏빗(Fitbit), 가민(Garmin)으로부터 신체활동 데이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부터 소셜

88) 영국 디지미(digi.me)는 '22년 10월 World Data Exchange(본사 시드니)에 인수됨
89) World Data Exchange 홈페이지
90)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20)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다.[91] 디지미는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은 디지미를 통해 개인정보의 이용을 허용한 기업으로부터 재무관리, 질병이력관리, 신체활동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트랜젝션당 또는 디지미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의 일부 비율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92]

〈그림 Ⅳ-3〉 디지미의 사업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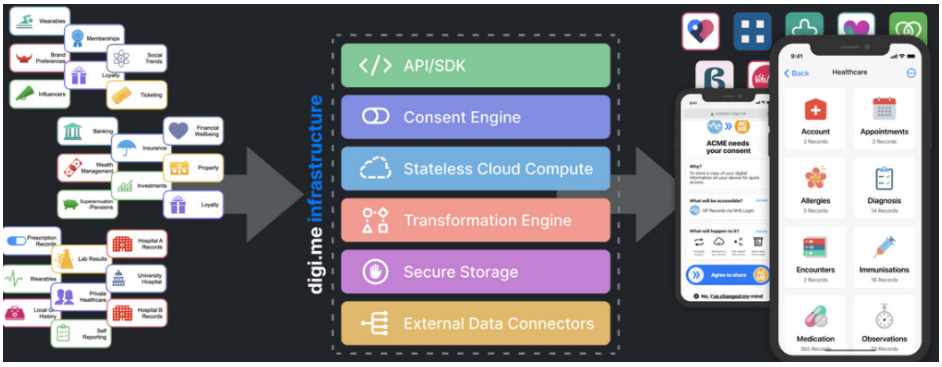

주: 디지미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고객 클라우드에 저장하며, 고객은 개인정보를 기업들과 공유하여 서비스와 보상을 지급받음
자료: 디지미(digi.me) 홈페이지

영국 디지미는 정보주체의 정보결정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높은 보안성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마이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개인은 본인의 판단하에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금전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정보 이용 기업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디지미 이용 고객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 직접 금융회사, SNS, 정부기관 등에 로그인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데이터 활용 기업을 스스로 지정해줘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즉, 디지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극대화하여 보장해주고 있지만, 고객들이 많은 선택을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이 오히려 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93]

91) World Data Exchange 홈페이지
92) 하나금융연구소(2020)

3. 시사점

국내에서와 달리 일본과 영국에서는 마이데이터 방식으로 데이터 거래소가 운영된다. 다시 말해 국내 금융데이터 거래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 정보은행과 영국 디지미에서는 정보주체의 선제적인 동의를 동반한 데이터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방식의 데이터 거래는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전적인 동의를 통해 기업들의 명시적인 데이터 활용 근거 및 양질의 분석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94] 반면에 국내 금융데이터 거래소에서는 데이터 거래에 정보주체가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익명정보 활용의 부담감으로 인해 데이터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이데이터 방식의 데이터 거래에서는 개인이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며, 이를 통한 금전적인 보상 혹은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95] 즉, 마이데이터 방식의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정보주체, 데이터 판매 중개자(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판매 기업, 데이터 활용 기업 모두의 효용을 확대할 수 있다.

〈표 Ⅳ-2〉 한국, 일본, 영국의 데이터 거래소 특징 비교

구분	국내 금융데이터 거래소	일본 정보은행	영국 디지미
데이터 거래 방식	가명·익명정보의 형태로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거래	정보제공에 대한 개인의 사전적인 동의	정보제공에 대한 개인의 사전적인 동의
데이터 활용	데이터 수요처가 직접 데이터 구매	정보주체가 위탁한 정보 행이 수요처 지정	정보주체가 직접 수요처 지정
정보주체 효용	없음	금전적 보상	금전적 보상 혹은 서비스

국내에서는 '20년 8월 개정 데이터 3법의 시행과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금융·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23년 3월 개정된 개인

93) 오세진·이재준(2021)

94) 이순호(2018)

95) 산업통상자원부(2022)

정보 보호법에 따라 '24년 3월부터는 의료, 유통 등 전 분야에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96] 하지만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는 데이터 유통을 허용하지 않아 일본, 영국과 같이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거래소 구현이 불가능하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본인의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볼 수는 있지만,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거래소와 전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연계할 경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결정권 강화를 통해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넘어 전체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은 '24년 본격적인 과금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97] 과금에 따라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보다 다양한 사업 기회가 필요하고 이를 요구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데이터 수집 범위의 확대를 통한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였지만, 이제는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 방안 모색에 보다 집중하여야 할 때이다. 즉, 정보제공자 중심의 정책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심의 정책으로 축의 전환이 필요하다. 데이터 거래소와의 연계 방안은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거래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데이터 거래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데이터 거래소 운영 방식은 마이데이터 방식으로의 데이터 거래소 도입이라는 큰 틀 하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보은행과 같이 개인이 인증 사업자에게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전송 권한을 위탁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혹은 영국 디지미와 같이 정보주체가 직접 개인정보 수요처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 정보은행과 비교하여 영국 디지미의 방식은 개인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과 시간이 부족한 개인에게 데이터 수요처 선정을 직접 맡길 경우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마이데이터 방식의 데이터 거래소는 정보주체의 선제적인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데이터와 같은 민감정보의 활용·거래 시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법률상으로 가명·익명처리를 통해 의료데이터의 활용·거래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

9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3. 3. 7),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9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12. 7), "지속 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합리적 과금체계 구축"

로 개인정보를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은 정보주체의 선제적인 동의이며 용이한 동의 절차를 위해 마련된 방식이 마이데이터이다.[98] 일본에서는 가공·익명처리된 의료데이터의 형태로 정보은행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의료데이터의 활용·거래를 활성화할 경우 보험회사의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보험회사는 높은 비율로 인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의료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회사를 비롯하여 생명보험회사에게도 데이터 거래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술적·제도적 정보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정보은행 인증 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 혹은 디지미의 본인 스마트폰 인증을 통한 클라우드 접근 방식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방안의 모색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철저하게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데이터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8) 조성은 외(2019)